#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02

발의연월일: 2025. 2. 4.

발 의 자:임오경·임광현·김남희

박 정·문대림·위성곤

윤준병 · 신영대 · 임미애

강유정 • 한민수 • 서영교

장철민 • 박홍근 • 김용만

유후덕 • 문정복 • 이병진

한정애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 등이 농협조합에 3천만원 이하 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2011년에는 농가인구가 3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농가 고령화율은 2011년 33.7%에서 2023년 52. 6%로 크게 상승함.

이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

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89조의3).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월 1일부터 2031 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2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저율과세 등) ①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u>2025년</u>	<u>2030년</u>
<u>12월 31일</u> 까지 발생하는 이자	12월 31일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u>2</u>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월 31일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u>2032년 1월 1일</u>